폐기물 처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2002년 4월 5일 제 362-II 호

제 1 조

본 법률의 목적과 주된 임무

본 법률의 목적은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의 관계를 규율 함에 있다.

본 법률의 주된 임무는 폐기물이 국민 생활과 건강,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예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며, 경제 활동에 있어서 폐기물의 합리적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제 2 조

주요 의미

본 법률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용어와 의미가 사용 된다. : 폐기물 처리 – 폐기물 발생, 수집, 보관, 운송, 매장, 재가공, 재활용, 판매와 관련한 업무;

폐기물 처리 대상 – 폐기물의 수집, 보관, 운송, 매장, 재가공, 재활용, 판매를 위해 사용되는 대상 ;

폐기물 증명서 – 폐기물의 발생 장소와 개별 특성을 증명하는 서류;

폐기물 – 원료, 재료, 반 재료 및 생산이나 소비 단계에서 발생된 기타 제품과 상품 본래의 특성을 상실한 상품 (제품)

폐기물 처분 한도 – 일정 기간의 허가된 폐기물의 양적 한도

폐기물 처리장 – 특별히 폐기물의 보관과 매장을 위해 할당되거나 장비가 설치된 장소

폐기물 매장 – 오염 물질이 자연 환경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폐기물에 대한 더 이상의 사용을 차단하는 것

폐기물 보관– 폐기물을 매장, 가공, 재사용을 목적으로 방출하기 전까지 특별히 설치된 보관소에 폐기물을 저장

폐기물의 재사용 – 폐기물에서 가치가 있는 성분을 추출하거나 폐기물을 2차적 원료, 연료, 비료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

폐기물 가공 – 보관, 운송, 재 사용 시 환경에 무해하도록 공학적 기법으로 폐기물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에 변경을 가하는 것.

폐기물 발생 기준 –제품 생산 시 개별 종류에 대해, 혹은 원료 개체에 대해 정해놓은 폐기물의 수량

위험 폐기물 – 폐기물의 구성 물질이 독성, 전염성, 폭발 위험성, 화재 위험성, 방사능, 지나치게 높은 반응도 등 위험 요소를 하나라도 포함하고 있고, 일정량과 일정 형태에서 독립적으로 혹은 다른 물질과 결합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생활을 위협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폐기물

제 3 조

폐기물 처리에 대한 법규

폐기물 처리에 대한 법규는 본 법률과 기타 법규로 구성된다.

폐기물 관리에 대한 법규는 대기 혹은 수중으로 오염 물질을 방출하거나 수집하는 것과 관련된 관계는 규율 하지 않는다.

또한 카라칼팍스탄 공화국의 폐기물 처리 관계는 카라칼팍스탄 공화국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국제 계약에 폐기물 처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국제 계약이 적용된다.

제 4 조

폐기물에 대한 소유권

폐기물에 대한 소유권은 원료, 재료, 반제품, 기타 제품 및 상품의 사용 결과로 해당 폐기물이 발생된 그 소유자에게 있다.

폐기물에 대한 소유권은 매매, 교환, 증여 등 기타 법률로 금지하지 않은 폐기물의 타인 양도 거래에 대한 계약을 근거로 하여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다.

폐기물의 소유자는 법규로 정한 한도 내에서 폐기물을 점유, 사용, 처분 할 수 있다.

토지의 소유권 변경 시 폐기물의 소유권의 이전과 유해물질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5 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각의 권한 :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각은 다음의 권한이 있다 :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가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이의 이행을 보장한다.

폐기물 처리에 대한 감독과 국가 등록 절차를 정한다.

폐기물 재사용 및 매장지의 토지대장 작성 절차를 정한다.

폐기물 처리 절차 및 관련 규정의 승인 절차를 정한다.

폐기물의 운송, 수출, 수입 절차를 정한다.

폐기물을 증서화하고, 절차를 정한다.

폐기물의 운송에 대해 국가 등록을 해야 하는 폐기물과 위험 폐기물의 목록을 정한다.

위험 폐기물 매장을 위한 토지 제공에 관한 사안을 결정한다.

썩지 않는 보관 용기 처리 절차를 정한다.

폐기물 처리장의 크기를 정한다.

법률에 따른 기타 권한을 수행한다.

제 6 조

폐기물 처리에 대해 특별히 권한을 부여 받은 국가 기관

폐기물 처리에 대해 특별히 권한을 부여 받은 국가 기관은 다음과 같다. :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자연 보호 국가 위원회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보건부

우즈베키스탄 관리국 “우즈코문히즈마트”

광산 감독 및 산업 안전 감독 관리국 (이하- 관리국 “사노아트콘테흐나조라트”)

제 7 조

폐기물 처리의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자연 보호 국가 위원회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자연 보호 국가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폐기물 처리에 대한 법령 준수를 국가적으로 관리 감독한다.

폐기물 처리에 대해 특별히 권한을 부여 받은 국가 기관의 업무를 조율한다.

폐기물 재사용 및 매장지 국가 토지 대장 업무를 수행한다.

폐기물 처리의 각종 학문-연구 실험, 견적 및 설계서류에 대한 국가 환경 검사를 실시한다.

폐기물 조성 및 폐기물 보관 장치에 대해 규정된 법규에 대한 동의권이 있다.

폐기물 처리 한도를 승인한다.

법률에 따른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제 8 조

폐기물 처리 부문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보건부 권한

폐기물 처리 시 위생 법규 및 법령이 준수되고 있는 가에 대해 국가 위생-보건 감독한다.

폐기물의 유해 작용으로부터 국민의 생활과 건강을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한다.

폐기물 처리 국가 위생-보건 검사 결과 보고서를 발급한다.

폐기물로 만들어진 상품 (제품) 에 대해 위생-보건 요구 사항을 정하고, 이에 대한 위생 증명서를 발급한다.

폐기물의 국민의 생활과 건강 유해 정도의 규정 방법을 정한다.

법률에 따른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제 9 조

폐기물 처리 부문 “우즈코무니히즈마트” 우즈베키스탄 관리국의 권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각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폐기물 처리 국가 프로그램을 제정하고 이에 대한 승인을 한다.

폐기물 재사용, 가공, 이동, 수집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법률에 따른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제 10 조

폐기물 관리 부문 “사노아트콘테흐나조라트” 관리국 권한

“사노아트콘테흐나조라트” 관리국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광산 채굴 혹은 생산 가공된 폐기물의 재사용, 보관, 등록에 대해 국가적으로 감독하고 관리한다.

방사능 폐기물 매장, 재사용, 이동, 보관 시 방사능 안전에 대한 국가적 관리를 실시한다.

법률에 따른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제 11 조

폐기물 처리 부문 지역 국가 권력 기관의 권한

지역 국가 권력기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일반 국가 프로그램 수행에 참여한다.

폐기물 처리의 지역 프로그램을 승인한다.

폐기물 처리부문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 환경을 조성한다.

해당 토지에 폐기물 처리장 설치에 대한 사안을 결정한다.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이 준수되고 있는가 감독한다.

폐기물 재사용과 수집을 하는 기업 설립에 협조한다.

법률에 따른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제 12 조

폐기물 처리 국민 자치 단체의 업무.

국민 자치 단체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 한다. :

해당 토지에 폐기물 처리장 사안 결정시 참여한다.

거주지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폐기물 수집에 대한 대금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한다.

폐기물 처리장의 위생 및 환경적 상태에 대해 관리 감독한다.

법률에 따른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제 13 조

폐기물 처리 부문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민은 다음의 권리가 있다. :

폐기물의 처리시 생활과 건강에 안전한 환경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위험 폐기물의 위치와 그 존재 여부, 현존 폐기물 처리장, 건설 중인 처

리장 혹은 계획중인 사항에 대해 완전하고, 신빙성 있는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폐기물 처리장 건설에 관한 사안 해결을 위해 토론장에 참석할 수 있다.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으로 발생한 재산, 건강, 생활상 손실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다.

폐기물 처리장의 위생 환경 상태에 대해 공적 관리에 참여할 수 있다.

국민은 다음의 의무를 지닌다. :

폐기물 처리 시 위생 법규, 법령, 기타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 폐기물 수집에 종사하는 기업, 기관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금 지불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

국민들은 법률에 따라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타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제 14 조

폐기물 처리 부문 법인의 권리

법인은 다음의 권리가 있다. :

특별히 권한을 위임 받은 국가 기관으로부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폐기물 처리에 관한 위생 법규 및 법령, 환경 법규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위생 법규와 법령에 따라 폐기물 처리장에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다.

특별히 폐기물 처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은 국가 기관, 지역 국가 권력 기관에 폐기물 처리장 운영, 건설, 설계, 배치와 관련된 제안을 할 수 있다.

폐기물 처리 국가 프로그램 입안에 참여할 수 있다.

폐기물 처리 결과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입은 손실을 보상 받을 수 있다.

법인은 법률에 따라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타 권리가 있다.

제 15 조

폐기물 처리 부문 법인의 의무

법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위생 법규, 법률, 환경 법규를 준수한다.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폐기물을 등록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활, 환경에 위험한 폐기물에 대해 위험도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확정한다.

폐기물 조성과 폐기물 보관 한도에 대한 규정 프로젝트를 작성한다.

자원적 가치가 있고, 재활용 대상인 폐기물의 손상이나 훼손하지 않고, 적합한 방법으로 보관하며, 수집한다.

제조 기술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폐기물을 섞지 않는다.

벌칙이 정해지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매장, 재활용, 가공, 보관하지 않는다.

자신이 소유한 폐기물 처리장의 위생 및 환경 상태에 대해 관리한다.

폐기물 처리시 손상된 토지의 재활 작업을 한다.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폐기물을 수집, 보관, 재활용하는 개인과 다른 법인에게 폐기물을 판매 혹은 양도 하거나, 재활용 되지 않는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매장한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역 국가 권력 기관, 폐기물 처리 관련하여 특별히 위임을 받은 국가 기관에게 폐기물 처리를 위반사실을 발견할 경우 이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폐기물 처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법인에게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국민의 재산, 건강, 생활, 환경에 대해 끼친 손해를 보상한다.

법인은 법률에 따라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타 의무를 지닌다.

제 16 조

폐기물 처리 부문 개인 사업자 권리와 의무

개인 사업자는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권리를 가지며, 본 법률이 법인에게 부여하는 의무 사항에 대해 의무를 진다.

제 17 조

폐기물 처리 시 안전 보장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법인의 활동은 국민의 생활과 건강 및 환경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국민의 생활과 건강, 환경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여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의 요구사항을 위반할 경우와 건강, 환경상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위험 폐기물을 조성했을 경우, 법인의 활동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한되거나, 중지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제 18 조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규

국민의 생활과 건강, 환경을 보호하고, 폐기물의 형성을 줄이기 위한 폐기물 처분 한도와 폐기물 형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폐기물 처리에 관하여 특별히 권한을 위임 받은 국가 기관의 동의를 받은 법인이 폐기물 형성 법규를 입안을 계획하고, 승인한다.

폐기물 처분 한도는 법인이 입안하고, 폐기물 처리에 관하여 특별히 권한을 위임 받은 국가 기관에 의해 승인된다.

폐기물 처분 한도와 폐기물 처리 법규의 입안과 승인 절차는 법률에 의해 확정된다.

제 19 조

폐기물의 환경 증명서

매매, 수입 수출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과 운송돼야 하는 위험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관련 위생 법규, 환경 법규에 따라 폐기물의 소유자에게 발급되는 환경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폐기물 환경 증명서 발급 절차는 법률로 확정된다.

제 20 조

위험 폐기물의 운송

위험폐기물은 법률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발급된 허가서, 폐기물 환경 증명서가 있을 경우, 이를 위해 특수 설비가 장착된 운송수단으로 운송될 수 있다.

위험 폐기물의 안전 운송에 대한 책임은 운송 기관이 진다.

제 21 조

폐기물 수입

외국 원산지의 방사능 폐기물 등 모든 형태의 폐기물을 포함하여 보관 및 매장을 목적으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으로 폐기물을 수입하는 것은 금지된다.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폐기물 수입은 가공, 재활용의 목적으로 국민의 생활, 건강, 환경에 안전이 보장될 경우에만 허용된다.

제 22 조

폐기물 매장과 보관 요구사항

폐기물은 위생 법규, 환경 안전 요구사항, 폐기물의 합리적 사용과 타인에게 양도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보관된다.

폐기물 매장지 (위험 폐기물 제외) 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역 국가 권력 기관에 의해 정해진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에 재활용 기술이 있는 폐기물은 매장할 수 없다.

폐기물을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 자연보호구역, 재활 구역, 유원지, 역사적 문화적 지정 구역, 수질 보존 구역, 위생 보호 구역, 국민의 생활과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자연보호 시설물과 같은 곳에 보관하거나 매장하는 것은 금지된다.

국민의 생활과 건강, 환경의 안전 보전과 천연자원 보존에 관한 요구사항이 준수된, 특별 연구 결과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로 토양 심층에 매장이 허용된다.

제 23 조

폐기물 처분에 관한 지불

특별히 지정되고 장비가 설치된 곳에 폐기물을 처분하고 비용이 징수된다.

비용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폐기물 처분 한도에 근거하여 국민의 생활과 건강, 환경에 대한 위험 정도에 따라 액수가 결정된다.

제 24 조

폐기물 재활용과 폐기물 형성을 줄이기 위한 활동 촉진

폐기물 형성을 줄이고, 재활용하는 방안에 관한 기술 도입 및 작업을 시행하고, 폐기물 재활용 장비를 생산하거나, 공장을 설립하며, 폐기물 축소와 재활용 정책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법인과 개인에게는 법률에 따라 특혜가 부여된다.

지역 국가 권력 기관은 자신의 권한 내에서 폐기물의 축소와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 25 조

폐기물의 축소와 재활용 정책에 대한 재정

폐기물의 축소와 재활용 정책에 대한 경비는 폐기물 소유주의 자금으로 충당된다. 이러한 정책을 위한 자금은 자연 보고기금, 예산외 기금, 법인과 개인의 자발적 추가 지원금 및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예산으로 충당될 수 있다.

제 26 조

폐기물의 국가 등록

수입, 수출되거나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영토 내 형성되어 존속하고 있거나, 운송수단에 의해

운반되고 있는 폐기물은 등록돼야 한다.

폐기물 증서는 법인이 폐기물 형태별로 작성해야 한다. 생산 기술로 인하여 폐기물의 개별 특성이 변경했을 경우 폐기물 증서를 개정, 보정해야 한다.

폐기물의 증서화 절차는 법률로 확정된다.

제 28 조

폐기물 매장과 재활용 장소 국가 대장

폐기물 매장과 재활용 장소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폐기물을 보관하고, 가공하고, 수집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질적 양적 성격, 이들의 처리에 관한 정보, 위험도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정보를 그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 매장 및 재활용 장소 국가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폐기물 매장 및 재활용 장소 국가 대장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 29 조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책임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대통령 I. 카리모브

법률에 따라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타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